#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40

발의연월일: 2021. 6. 28.

발 의 자: 송석준 • 박덕흠 • 배준영

유경준 • 유상범 • 윤창현

이종배 · 정찬민 · 태영호

허은아 의원(10인)

#### 제안이유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 값 폭등, 전월세 대란으로 국민들의 극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정부가 2017.12.13.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으로 유도한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여 전월세 매물의 시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절벽으로 전월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즉각적인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폐지한 아파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제도(10년 이상 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제도(5년 이상 임대)를 부활시키고,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 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지방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의 일몰규정을 2021.1 2.31.에서 2024.12.31.까지 3년 연장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아파트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일몰규정을 20 21.12.31.에서 2024.12.31.로 3년 연장함(안 제31조제1항)
- 나.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규정을 2021.12.31.에서 2024.12.31.로 3년 연장함(안 제31조제4항).
- 다. 장기일반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일몰규정을 2021.12.31.에서 2024.12.31.로 3년 연장함(안 제31조의3제1항).

#### 참고사항

이 법안은 송석준 의원이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10년 이상 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 부활을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임.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	①	
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		
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		
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		
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		
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		
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		
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		
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		
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를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감면	<u>2024년 12월 31일</u>	
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		
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		
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		
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2. (생략)
- ② ③ (생 략)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 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 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 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 택과 「지방세법」제4조제2항 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 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 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 3. (생략)
- ⑤・⑥ (생략)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저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4
<u>2024년</u>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세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 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 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 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 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 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 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 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 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 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 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 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

2024년 12월 31일

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 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②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